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4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10. 28.
4. 회부일자 : 2021. 11. 1.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8조의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1년도 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 말 조성액(e) (d=a+b-c)	용자금 미회수채권 (e)	22년도 말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생태전환교육기금	0	1,006,000	500,000	506,000	0	506,000

※ 이자 추후 반영. 집행계획은 코로나19 등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참고사항

○ 관계법령: [참고자료1]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8조의2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41호로 제출되어 2021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기금 개관

-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 학생 등에게 진행하는 생태전환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2020년 1월,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020~2024년)」를 통해 ‘생태전환교육’의 개념을 제시하여 과거 ‘환경보전’에 국한된 ‘학교 환경교육’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적 사고 함양 등으로 확장하고, 이듬해부터 농촌유학과 채식선택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표-1] 2021년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추진 사업 및 예산액

(단위: 천원, '21.9.30.기준)

생태전환교육 추진 사업	소요 예산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 운영	567,650	553,118	14,532

생태전환교육 교원역량강화 연수 운영	202,270	195,115	7,115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1,137,200	489,612	647,588
합 계	1,907,120	1,237,845	669,235

- 위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2021.7.22.)하여 생태전환교육 기금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기금은 기후위기 가시화로 국민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탄소중립을 비롯한 환경 의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내에서 시행되는 학교 환경교육의 적극적 시행을 위해 조성된 것입니다.

나. 수입·지출 계획

-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총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2022년도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 원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 6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에¹⁾ 따른 교육청의 전입금과 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동 기금의 지출액은 비용자성 사업비 5억 원과 예치금 5억 6

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백만 원, 총 10억 6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자성 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1~2학년에 재학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 학교에 단기 농촌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 각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²⁾ 적합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금 지출 계획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제13조에³⁾ 근거하여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심의 수당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 심의와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등을 위해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하는 바 지출계획에 심의위원 수당 등 기금 운용을 위한 기본 경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불능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생태전환교육 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의 지원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한편, 동 기금의 운용에 대해 살펴보면 지출액 중 예치금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금고인 NH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제13조제1항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기금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지방기금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호, 2008.3.11.)」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은⁴⁾ 기금별로 자치단체 금고가 아닌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금의 단기성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장기성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고 다양한 운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금고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끝으로

- 동 운용계획안은 조례에 따른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심의

4)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호, 2008.3.11.제정)

가. 기금자산관리(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의 현금자산은 세계현금의 보관의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으로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
※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나. 기금여유자금 관리

-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21.10.26.) 제출되었는 바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추세와 교류 대상 지역의 사정 등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탄력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출계획에는 교원·학부모의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동, 생태전환교육 교재 개발, 탄소배출제로학교 구축 등의 사업은 일반재원으로 운영하고, 기금에는 농촌유학 운영을 위한 지출만 반영되어 있는바

동 기금의 운영 취지가 농촌유학 확대가 아닌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임을 인지하여 기금 조성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 업무 등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114호, 2021. 7. 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의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식과 일상의 생태적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전환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의 학생 등에게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과 생태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의 가치와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와 학교 운영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전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생태전환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3. 생태전환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교직원과 학생 등의 생태소양 함양을 위한 조직·학교문화 조성 방안
5.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6.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평가
7.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생태전환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생태전환교육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촌체험활동 등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생태전환교육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태전환교육 추진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및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생태전환교육 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의 지원

제1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생태전환교육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생태전환교육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소관 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생태전환교육이나 환경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태전환교육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 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내실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②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20조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전환교육 관련 지도자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생태전환교육 관련 학습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3. 생태전환교육 교원 연수 지원
 4.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5. 그 밖의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생태전환교육의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생태전환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생태전환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생태전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춘 생태전환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